

의안번호	2203362
의 퇴 인	서미화 의원
회 답 일	2024. 9. 23.
추 계 번호	24C30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9억 5,900만원(연평균 221억 9,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 수립 (안 제53조제3항)	1,034	-	-	-	-	1,034	207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안 제54조)	17,120	17,120	17,120	17,120	17,120	85,600	17,120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교육 및 자립 생활교육 실시(안 제54조의2)	3,364	3,364	3,364	3,364	3,364	16,819	3,364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권리 교육·홍보(안 제54조의3)	1,501	1,501	1,501	1,501	1,501	7,505	1,501
추가재정소요 합계	23,019	21,985	21,985	21,985	21,985	110,959	22,19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6조의3(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및 춤형 공공일자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방송 및 언론, 장애인 및 가정, 일반 국민 등을 상대로 하는 교육, 문화예술,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 자리를 개발·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53조(자립생활 지원) 제1항·제2항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의 기회 향유와 역량의 발휘를 통하여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1. 장애인의 장기 시설 입소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시설 입소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상담·교육·홍보 3.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전환지원 서비스 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개인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5.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및 수리, 임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주거지원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간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직업 활동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53조(자립생활 지원)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53조의2(자립생활지원 신청)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전환지원에 필요한 홍보, 상담, 지원 필요도 조사, 희망자 조사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53조의3(시설 퇴소 및 전환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의2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시설 입소 이전에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함 (제2항)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은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2.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3. 장애인 개인이 계약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의 제공 4. 중증장애인 1일 최대 24시간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권한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개인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공공 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제1항~제3항) 의무규정 (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54조(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자립생활 전반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장애인의 기본권 향상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육성하여야 함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함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1개소 이상 제1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54조의2(인권 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거주시설 등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매년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8	안 제54조의3(자립 생활 권리의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의 권리를 장애인, 장애인가족,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공익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6조의3(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1항·제2항	×	
3	안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3항	○	○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4	안 제53조의2(자립생활 지원 신청) 제3항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안 제53조의3(시설퇴소 및 전환지원)	×	
6	안 제54조(장애인자립 생활지원센터)	△	○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7	안 제54조의2(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	○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8	안 제54조의3(자립생활 권리의 홍보)	○	○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46조의3, 제53조제1항·제2항, 제53조의2, 제53조의3 등은 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
 - (안 제46조의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개발·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창출 가능한 일자리 수와 인건비 단가 등의 정보가 부재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
 - － 개정안이 명시한 것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방송 및 언론, 장애인 및 가정, 일반 국민 등을 상대로 하는 교육, 문화예술,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수요 등을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음
 - (안 제53조제1항·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등을 알 수 없음
 - (안 제53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이 자립생활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전환지원에 필요한 홍보, 상담, 지원 필요도 조사, 희망자 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전담인력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홍보, 정보제공 및 자립조사 등을 수행 중(2024년 자립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25억 5천만원)
 - (안 제53조의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퇴소 또는 입소 전에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의 수준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준 등을 알 수 없음

-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 퇴소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 제공 및 주거환경조성비를 지원(2024년 200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율 50%로 보건복지부 예산 6억원 지원)
-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2022년 기준 500~1000만원 수준)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 수립(안 제53조제3항)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 주기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용역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서는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가 5년 주기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
 - (보건복지부) 2022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용역에 소요된 비용(9,900만원)을 적용하되, 추계기간 단가가 유지된다고 가정
 - (광역 시·도)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유사사례 연구용역의 평균 단가(5,500만원)를 적용하되, 추계기간 단가가 유지된다고 가정
 -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에 2천만원 소요

- 경상남도는 2022년 “경상남도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9천만원 소요

□ 추계결과, 5년 주기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0억 3,400만원(연평균 2억 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종합 계획 수립(안 제53조제3항)	1,034	-	-	-	-	1,034	2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안 제54조)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재 전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미지원하는 센터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하여 안 제54조제3항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

-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신고의무가 없는 시설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센터 수를 알 수 없음
-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75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1억 6천만원(국비 6,400만원, 지방비 9,6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개소당 4,800만원~1억 5,10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안 제54조제4항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현황 중 해당 센터

가 미설치된 107개 시·군·구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전국 총 252개소로 122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음
- 220개 시·군·구 중 해당 센터가 기 설치된 122개 지역을 제외하고 107개 지역에 신규 센터를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지원 단가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의 지원 단가(1억 6천만원)를 적용
 - 추계기간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에 1개소씩 해당 센터를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856억원(연평균 171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대상 센터 수(A)	107	107	107	107	107	-	-
지원 단가(B)	160	160	160	160	160	-	-
추가재정소요(A×B)	17,120	17,120	17,120	17,120	17,120	85,600	17,1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실시(안 제54조의2)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¹⁾
- 장애인 거주시설(2023년 기준 1,529개소)을 대상으로 연간 각 1회의 인권교육과 자립생활교육을 해당 시설에서 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교육 실시를 위해서는 강사수당(1인), 보조강사수당(1인), 교육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교육 장소 임차료, 교통비 등은 추가로 소요되지 않음)

1)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시설의 장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것으로 가정)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라 강사수당은 22만원, 보조강사수당은 8만원, 교육운영비 단가는 80만원으로 가정(총 110만원)

- 추계결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교육과 자립생활교육을 각각 연 1회씩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68억 1,900만원(연평균 33억 6,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대상 시설 수(A)	1,529	1,529	1,529	1,529	1,529	-	-
지원 단가(B)	1.1	1.1	1.1	1.1	1.1	-	-
실시 횟수(C)	2	2	2	2	2	-	-
추가재정소요(A×B×C)	3,364	3,364	3,364	3,364	3,364	16,819	3,36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자립생활 권리의 홍보(안 제54조의3)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의 권리를 장애인, 장애인 가족,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에 7억원,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차별금지 확산 사업에 8억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
 -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은 콘텐츠 제작, 강사 양성, 보수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성
 -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차별금지 확산 사업은 대국민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인 차별 및 학대 예방 홍보영상 제작 등으로 구성
- 유사사례와 동일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하되, 추계기간 단가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권리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5억 500만원 (연평균 15억 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권리 교육·홍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권리 교육·홍보 (안 제54조의3)	1,501	1,501	1,501	1,501	1,501	7,505	1,5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